

# 삼척시의회기 및 배지등에 관한 규칙안

의안 번호	135
----------	-----

발의년월일 : 1995. 1. 7

발의자 : 의장 제의

## 1. 제안이유

경기도 남양주시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종전의 삼척시와 삼척군이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삼척시의회기 및 배지등에 관한 규칙과 삼척군의회기 및 배지등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제작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①의회기의 모형, 색상, 규격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도형과 무궁화도형 가운데의 원에 "議"자, 무궁화도형 하단에 "三陟市議會"자를 예서체로 표시 한다.
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議"자 및 "三陟市議會"자는 금색, 무궁화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 규격을 준용한다.  
②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③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게양)** ①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②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의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의 제식)** ①의원배지의 모형, 색상, 규격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 가운데의 원에 “議”자를 표시 한다.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2와 같다.

②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며, 가운데 원의 바탕은 철보로 도금한다.

③의원배지의 이면에 읍.면.동 지역구 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

**제7조(배지교부 등)** ①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의원 1인당 1개를 교부한다.

②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회사무국에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배지의 폐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폐용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